

의안번호	2209498
의 퇴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5. 5. 26.
추 계 번호	25B20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2 (동물검역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이하 “검역사”라 한다)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5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의4에 따른 동물검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음(제2항)	
		그 밖에 검역사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의2 (동물검역사)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동물검역사 채용·배치(안 제30조의2 신설)

- 현행법 제30조¹⁾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입 동·축산물의 검역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관을 두고 있음
 - 주요 업무: 수출입 동·축산물의 검역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소에 출입, 여행객 및 물품에 대한 검사, 조사(질문), 수거, 소독 등 필요한 조치
 - 운용 인원: 현장근무(지역본부) 정원 195명 중 현원 139명(2025년 4월 기준)
 - * 현원 총 139명 = 수의주사(6급) 72명, 수의주사보(7급) 67명
-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 동물검역기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물검역사 인력 운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는 제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의사 자격 소지를 요구하는 동물검역관의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현행 동물검역관 정원 195명의 조정 없이 동물검역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동물검역관 정원을 조정하면서 동물검역사를 채용하는 경우 상대적 조정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표 1] 동물검역관 인건비 현황(2025년)

(단위: 천원)

구분	현원 (A)	인건비(보수)			
		2025년 1~4월			연평균/1인 (E=D×12월)
		총액(B)	월평균 (C=B/4개월)	월평균/1인 (D=C/A)	
수의주사(6급)	72명	1,724,353	431,088	5,987	71,848
수의주사보(7급)	67명	1,117,219	279,305	4,169	50,025
계	139명	2,841,572	710,393	10,156	121,87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개정안에 따른 동물검역사가 수행하게 될 업무의 성격 및 범위 등이 구체화되고, 그에 따라 동물검역관 및 동물검역사의 필요 인원 규모가 선행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동물검역관 세부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조항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입국자에 대한 신고서 수령. 필요시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
-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 필요시 의심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검사에 필요한 물건,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 필요시 소독
- 제33조(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지정검역물의 반송, 소각·매몰 등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소각·매몰 등 조치
- 제36조(수입 검역)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함
- 제38조(화물 목록의 제출) 제1항에 따른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관에게 지정검역물의 적재 여부 확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함
- 제41조(수출 검역 등)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제45조(선박·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입국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남아 있는 음식물의 처리 상황을 확인.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
-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 필요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운송인”이라 한다)에게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정보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